

# 일제강점기 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1)

문 옥 배

## 1. 머리글 : 일제는 왜 음악을 통제했는가?

음악 사상 중에는 음악은 순수해야 하고, 정치·경제 등 사회의 그 어떤 제약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미학관이 있다. 이 미학관을 주장하고 옹호하던 자들 중에는 음악가도 있었지만, 그 사회의 지배 세력도 있었다. 지배 세력은 음악은 사회·정치로부터 분리되어 밝고 아름다운 정서 곧 오직 미적 순수함만을 담아내야 한다고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정권을 잡은 지배 세력은 음악은 순수해야 한다는 외적 외침과 달리 더욱 정치적으로 다루었다. 대중에게 불리는 노래 중에 그 사회의 지배 체제를 비판하거나 가치 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배 체제는 그러한 노래를 통제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게 되고, ‘심의’ 또는 ‘검열’이라는 장치가 생겨났다. 곧 노래를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음악의 순수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문화적 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사회 지배 세력은 제도적 통제 장치 하의 음악을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대중의 취미와 선입관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지배 체제에 의한 음악의 제도적 통제에 이르면, 음악은 사회적·정치적

---

1)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G00005)

성격을 갖는 의식(意識) 도구가 된다. 음악이 작품으로 소통되어도 궁극적으로 생산되어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통제된 의식이기 때문이다. 곧 통제는 음악의 미적 영역뿐만이 아닌 의식의 영역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의식 구조가 지배 체제를 통해 계획·조작·유발·통제되는 사회를 ‘관리된 사회’라고 말한다.<sup>2)</sup> 제도적 통제 하에서의 음악은 참된 요구들의 산물이 아니라 유발되고 조작된 요구의 산물인 것이다. 통제된 음악은 암암리에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만을 차별적으로 생산·분배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통제, 개인에 대한 의식의 통제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지배 체제는 현존하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며, 이때 지배 체제는 음악을 순수하게 존재하게끔 놓아두지 않는다. 그 결과 음악적 영역들은 확립된 체제 질서 속에서만 선택되며, 개인적인 의식을 통제하는 양식들로 변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제된 음악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며, 그런 만큼 전반적인 사회 지배 구조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도적 통제 하에서의 음악은 생산 소통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배 체제의 목소리를 생산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게 되고, 우선적으로 지배 체제의 정치적·경제적 지배의 정당성을 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필요로 하는 기능 곧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통제 하에서의 음악은 광범위하게 대중의 상상력과 의식을 일정하게 조작하는 일에 관여하여 지배 체제의 규범·가치·지식 등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전파하는, 참과 거짓의 제한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통제 관리된 음악은 체제의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가치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동조를 통한 사회

2) Davi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p.77.

적 통합을 이루는 ‘교화수단’·‘조작기술’의 장치가 되기도 한다. 한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지식을 통제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계층이 그보다 더 힘이 약한 집단이나 계층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sup>

한국에 위와 같은 문화통제이론이 적용되어 음악이 제도적으로 통제된 효시는 일제강점기부터이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효과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통제하였다. 1907년 <보안법>과 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된 <출판법>에 의한 노래책과 노래의 통제, 1933년 5월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에 의한 레코드의 통제, 1934년 3월 <개정출판법>과 1936년 <불온문서임시취체령>에 의한 노래책의 통제, 1938년 2월 조선총독부의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에 의한 찬송가의 통제, 1938년 3월 31일 <국가총동원법>과 1941년 12월 18일 <언론출판집회결사등임시취체법>에 의한 노래책과 공연의 통제, 1944년 5월 8일 <조선흥행등취체규칙>에 의한 공연활동 통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의 대상에는 음악 출판물과 노래, 레코드, 음악 공연 등 모든 음악 활동 분야가 포함되었다.

왜 이렇게 일제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음악을 통제했는가? 이는 일제가 대한제국시기부터 해방 이전까지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및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불린 애국계몽운동노래, 자주독립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래, 교육·운동을 권장하는 노래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불린 노래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식적 영향력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음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불린 애국계몽노래로는 한일합병 전 대한제국 당시 『독립신문』을 통하여 발표된 수많은 애국가와 독립가, 당시 의병운동에서 불린 유홍석 작사의 <의병창의가>(義兵倡義歌), 이석용 작사의 <의병격

3) 이왕석, 『비판 커뮤니케이션』(서울 : 나남, 1989), 103쪽.

중가>(義兵激衆歌), <의병대가>, <의병군가>, 왜놈에 대한 복수를 그린 <복수가>, 친일 매국 단체인 일진회(一進會)에 대한 반감을 그린 <일진회가>와 <일진회야>, 의병과 관군들과의 전투가 형제간의 싸움이라하여 비통감을 그린 윤희순 작사의 <애달픈 노래>, 1905년 을사조약이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되자 자결한 민영환의 의의를 기려 부른 <충신가>와 <충정공 민영환 순절송>, 이와 반대로 나라로 팔아먹은 을사5적(박제순·이완용·이지용·이근택·권중현)을 신랄하게 풍자한 <매국경축가>, 안중근의 의거를 그린 <십진가>, 외채를 갚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의 <국채보상가>, 1920년대 조만식을 중심으로 일제의 경제적 수탈정책에 항거하여 벌였던 범국민적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인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의 <물산장려가>, 윤봉길이 조직한 월진회의 <월진회가>(윤봉길 작사), 기독교 면려 운동가들이 부르던 남궁억의 <일하러 가세>,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의 <흥사단가>(안창호 작사), 이광수가 작사한 <수양동우회가> 등등이 있다.

위와 같이 일제강점기 하의 대다수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는 노래가 항상 같이 하였고, 노래를 통하여 운동의 의도가 대중에게 파급되었다. 곧 애국계몽운동 및 독립운동에서 노래는 대중의 운동 양식이자 투쟁 양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래들의 상당수는 일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체제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노래가 갖는 힘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식민지 체제의 안녕질서를 위해 제도적 장치에 의해 노래를 통제하고자 했다.

본 글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총독부의 음악 통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음악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곧 일제가 어떻게 식민지 조선의 통제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조선총독부의 음악 통제 장치들

조선총독부의 음악 통제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였다. 하나는 검열에 의한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장려(獎勵) 방식이었다. 본 장에서는 노래 책과 노래, 레코드, 종교음악, 공연 및 음악인, 학교음악교육 등 각 분야에 검열에 의한 음악 통제 장치로 무엇이 있었으며, 어떻게 행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1. 노래책 및 노래의 통제

통감부는 1907년 7월 법률 제2호로 <보안법>을 공포하여,<sup>4)</sup> 일제의 통치 체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1909년 2월 23일에 법률 제6호로 <출판법>을 공포하였다.<sup>5)</sup> 이 출판법은 신문을 제외한 발매 반포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일체의 문서와 도서를 그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원고의 사전 검열과 출판물을 배포하기 전 납본 검열을 의무 규정으로 둔 이중 통제 장치였다. 이처럼 사전 검열제와 발행 허가제를 명시한 이 법을 위반한 출판된 문서나 도서에 대하여는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하고 그 판(版)과 인본(印本)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일병합 후 출판물에 대한 허가와 통제를 담당할 부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였고, 검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상설 부서로 도서과에 검열계를 설치하였다. 출판법에 의한 노래책의 통제는 일제강점기의 전 시기를 통하여 시행된 노래 통제 장치였다. 곧 노래책의 통제는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 소통의 통제를 의미한다.

통감부는 <출판법>과 별도로 1908년 8월 28일 학부령 제16호 <교과

4) 「법률 제2호 보안법」, 『대한제국관보』(내각 법제국 관보과), 1907년 7월 29일자, 제 3830호.

5) 「법률 제6호 출판법」, 『대한제국관보』(내각 법제국 관보과), 1909년 2월 26일자, 제 4311호.

용도서 검정규정>을 발표하여,<sup>6)</sup> 음악 교과서의 통제를 시행하였다. 사립학교에서 사용되었던 창가책들이 이 규정에 의해 통제되었다.

1912년 3월 부령 제40호로 <경찰범처벌규칙>을 공포했다.<sup>7)</sup> 이 법에 의해 금지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하는 것이 불허되었다. 문화정치기(1920-1931)에 들어서 언론과 사회운동이 점차 고양되자, 1925년 4월 21일 법률 제46호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고,<sup>8)</sup> 28년에는 이 법을 대폭 개정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 체제에 반하는 사회운동 노래들을 통제하였다. 3·1운동 이후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어 각종 노동 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1920년 4월 조선 최초의 전국적 성격을 띤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에는 조선노동총동맹,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 등이 결성되었다. 곧 사회주의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지도 사상으로 대두되었고, 일제는 이 운동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식민지 통치의 방해물로 보았다. 이는 1925년 공포된 <치안유지법>의 “제1조, 국체(國體)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것”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일제는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였고, 사회주의운동과 관계된 노래 역시 금지시켰다. 5월 1일 노동절과 관계된 노동운동가(運動歌)인 <메이데이노래>(May Day Song)가 금지곡이 되었고,<sup>9)</sup> 노래 부르는 행위조차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사회주의사상은 노동운동에 사회주의 혁명을 동반하였다. 따라서 노동운동에서는 성격상 노동가 외에 혁명가도 불리었다. 일제는 혁명가가 체제, 곧 국체의 변혁을 꾀하는 것이었기에 가창은 물론 창작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심지어 민간 운동 노래도 금지하였다. 1920년대 들어 기독교계를 중

6)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 검정규정」, 『대한제국관보』(내각 법제국 관보과), 1908년 9월 1일자, 제4165호, 부록.

7) 「부령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3월 25일자, 제470호.

8)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조선총독부관보』, 1925년 4월 27일자, 제3807호.

9)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경성 : 조선총독부경무국, 1941), 285쪽.

심으로 술·담배·아편 등을 금하자는 금주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금주운동은 단순히 절제운동이 아니었다.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었고, 곧 민족운동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때 불린 <금주가>(임배세 작사·작곡)를 금지하였다.<sup>10)</sup>

<금주가>

1. 금슈강산 내동포여 술을입에 대지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친치될가 늘두렵다
2. 폐가망신 뿔독주는 빛도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야는 일전훈훈 안쓰러네
3. 전국술값 다합하야 곳곳마다 학교세워  
자녀수양 늘식히면 동서문명 잘빛내리
4. 턴부주신 네재능과 부모님께 맞은귀테  
술의독과 맞지말고 국가위해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마라그술 아 보지도마라그술  
조선사회 복맞기는 금주홈 잇느니라

일제는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창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불량창가’(不良唱歌), ‘불온창가’(不穩唱歌)라는 용어를 만들어 노래 통제를 시행하였다.<sup>11)</sup> 한일병합 이전부터 각 사립학교의 교가(校歌)중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불량창가로 규정, 학부(學部)로 하여금 이를 금지 조치하게 하여 <정신가>(精神歌), <동포경성가>(同抱警醒歌) 등이 금지되었다.<sup>12)</sup> 1939년에는 교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도(道) 학무과장회의에서 ‘교가인가제’(校歌認可制)의 시행을

10) 「금주가 배부한 것을 출판법으로 취조」, 『동아일보』, 1931년 9월 9일자.

11) 「여학생의 불온창가」, 『매일신보』, 1921년 4월 15일자 ; 「불온창가」, 『매일신보』, 1923년 3월 12일자.

12) 「교가단속」, 『대한민보』, 1909년 7월 2일자.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39년 4월 6일 6인의 교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7일 3천여 개 학교의 교가 가운데 81개교의 교가를 심의했다. 이 중 54개교의 교가를 시국(時局)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금지하였고, 앞으로 새로 작곡하는 교가도 사전에 총독부에 제출, 인가를 받게 했다.<sup>13)</sup>

한일병합 이전 애국계몽운동기에 많이 불린 노래가 애국가와 독립가였다. 애국가와 독립가는 주로 『독립신문』을 통하여 발표되었고, 가사 내용은 자주독립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한일병합 이후에는 과거부터 불린 모든 종류의 애국가를 금지하였고,<sup>14)</sup> 애국가를 부르면 경찰서에 연행되어 형사 처분을 받았다.<sup>15)</sup>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이와 함께 일본정보국에서는 연합군에 참가한 나라의 음악을 적국의 음악, 즉 적성음악(敵性音樂)으로 규정하였다. 1943년에 적성음악 추방령을 내려 1천 1백여 곡에 이르는 노래를 적성음악으로 규정, 금지하였다. 심지어 재즈도 적성음악으로 분류되어 금지되었다.<sup>16)</sup> 그러나 모든 영·미의 노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어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알려진 노래는 제외되었다.<sup>17)</sup>

일제하에서 금지 처분된 노래책을 살펴보면, 처분 내용이 ‘풍속’·‘비밀출판’·‘삭제 후 반포’에 비해 ‘치안’ 및 ‘치안 방해’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음악 통제가 식민지 통치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래책의 금지는 사실상 노래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래책이 금지되면 그 책에 수록된 노래를 부르는 것도

13) 「황국신민정신 고조, 교가에도 인가제」, 『매일신보』, 1939년 4월 19일자; 「교가를 인가제로」, 『매일신보』, 1939년 6월 3일자.

14)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 253쪽.

15) 「송전(崇善)학생을 구인, ‘동해물과 백두산이’ 문제」, 『조선일보』, 1928년 5월 1일자; 「애국가로 경찰서」, 『조선일보』, 1923년 10월 2일자.

16) 「제스 음악금지 레코드음악도 정화」, 『동아일보』, 1940년 8월 4일자.

17) 「미영계음악 : 일률로 금지는 안는다(정보국)」, 『매일신보』, 1943년 1월 19일자.

금지되기 때문이다. 모임에서 금지된 노래를 부르면 불온하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취조되는 경우도 있었다.<sup>18)</sup> 금지된 노래와 관련된 음악회도 공연허가를 내주지 않았다.<sup>19)</sup> 또한 금지된 노래책을 보면 출판년도와 금지년도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단 출판 허가를 해 주었다가 후에 금지한 것으로, 일제 말로 갈수록 강화된 법 집행에 의해 이와 같은 노래책이 많이 생겨났다.

다음의 금서 목록은 위와 같은 음악 통제 장치에 의해 금지된 노래책들이다.

<표 1>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지 처분된 노래책<sup>20)</sup>

저 자	서 명	출 판 사 항	처분년도	처분사유
이성식	중등창가	황성서적업조합, 1910	1910. 4.15	비밀출판
이기종	악전교과서	황성서적업조합, 1910	1910. 4.20	비밀출판
윤치호	찬미가	광학서관, 1905	1912. 2.7	치안방해
—	신편창가	미상	1912. 5.13	치안방해
—	창가	미상	1912. 5.13	치안방해
이상준	중등창가	김용준, 미상	1912. 8.15	발행불허
명동예수교회	신찬창가집	명동예수교회, 1913	1913. 10.8	치 안
—	최신창가집	만주 : 광성중학교	1915. 8.11	치 안
—	창가집	개성 : 한영서원	1915	치 안
한영서원	창가집	한영서원, 1915	1915. 11.13	불 온
—	새노래	조선예수교장로회, 1930	1930. 8	치 안
이상준	풍금독창중등창가집	삼성사, 1921	1930. 8.8	치 안
조선가요연구소	정선조선가요집 제1집	1931	1932. 1	치 안
—	불멸:푸로레다리아동요집	중앙인서관, 1931	1933. 5.18	치 안
—	메-테와의 附메-테가	홍문서관, 1930	1935. 8.30	치 안

18) 「피로연에 불른 창가가 불온하다는 문데로 단천서(端川署)에 3명 취조」, 『동아일보』, 1929년 3월 6일자.

19) 「음악회도 금지」, 『동아일보』, 1928년 8월 18일자.

20) 출처: 「내부고시 제32호 중등창가」, 『관보』(내각 법제국 관보과), 1910년 4월 20일자, 제4656호; 「내부고시 제38호 악전교과서」, 『관보』(내각 법제국 관보과), 1910년 4월 23일자, 제4660호; 조선총독부경무국, 『경무월보(警務月報)』(1910-12), 제1-22호; 조선총독부경무국, 『경무회보(警務彙報)』(1912), 제23-32호; 조선총독부, 『금지 단행본 목록』(1941).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미국 桑港 제한인동민회 미상	1936. 3.4	치 안
—	언문악보	桑港대한민국민회, 미상	1936	발행금지
한석원	소년소녀가극집 제1집	영창서관, 1924	1937. 1.15	치 안
한석원	소년소녀가극집 제2집	영창서관, 1927	1937	치 안
—	가곡집 제1집	조선문예회, 1937	1937	삭제반포
강신명	아동가요곡선삼백곡	농민생활사, 1936	미상	치 안
김준이	동요집 제2집	미상	1938	—
—	가곡집	허대전, 1925	1938. 3.14	치 안
현재명	현재명작곡집 제1집	한규상, 1931	1938. 5.14	치안방해
장경휘	청년노래가락창가	미상, 1937	1938. 9.20	풍 속
김재덕	강남제비창가집	미상, 1935	1939. 5.19	치안방해
김재덕	서울타령창가집	미상, 1935	1939. 5.19	풍 속
김준환	청년남녀삼천리신창가집	미상, 1934	1939. 6.12	풍 속
덕홍서림	현대유행팔도명창가시집	덕홍서림, 1934	1939. 7.29	치 안
신태삼	모던서울창가집	세창서관, 1937	1939. 8.4	치 안
노영고	근화창가	근화사, 1923	1939. 12.1	치 안
강하형	망야타령창가 : 최신유행	태화서관, 1932	1940. 2.17	치 안
강의영	특별무궁화창가집	영창서관, 1935	1940. 2.17	치 안
김재덕	조선행진곡창가집	미상, 1935	1940. 4.16	치안방해

## 2.2. 레코드의 통제

한국에 음반이 들어온 것은 1880년경으로, 미국의 음반회사인 콜럼비아사와 빅터사가 조선에 들어와 한국 전통음악을 취입했다. 191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일본축음기상회가 들어와 일본 대중음악 음반을 수입, 유통하기 시작했다. 음반산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음반사들이 조선에 지사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927년에 일동축음기(日東蓄音機), 1927년에 일본 폴리돌축음기상회, 1929년에 일본 빅터축음기주식회사 등이 조선 지사를 설립하여 일본 음반만이 아니라 조선 음반도 발매하기 시작했다. 음반산업이 절정기를 맞은 것은 1930년대로, 1931년에 시에론레코드(Chieron Record), 1932년에 태평축음기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33년에는 조선인 이철(李哲)에 의

해 한국인이 최초로 세운 오케(Okeh)축음기상회가 설립되었다. 그 밖에도 군소 음반회사인 디어(Deer)레코드, 금조인특허(金鳥印特許)레코드, K.I.레코드, 킹(King)레코드, 고라이(Korai)레코드, 코리아(Corea)레코드, 리베라(Libera)레코드, 밀리온(Million)레코드, 쇼치쿠(Shochiku)레코드, 시스터(Sister)레코드, 톰보(Tombo)레코드 등이 설립되었다. 음반산업은 1907년부터 45년까지 발매된 음반이 6,500여 종에 이르는 등 대 호황을 이루었다.<sup>21)</sup>

1930년대 조선의 음반시장이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자 조선총독부는 관심 두지 않았던 음반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그동안 음반에 대해서는 <치안법>을 적용하여 문제가 있는 음반을 압수 또는 연주(감상)를 금지하는 정도였으며, 음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sup>22)</sup> 곧 음반의 검열은 경찰 시찰권외의 문제였다. 그러나 유성기 보급이 확대되고 음반이 대중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검열 제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치안법이 아닌 음반만을 취체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1933년 5월 22일 부령 제47호로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取締規則)을 공포하고, 6월 15일부터 경무국 도서관에서 단속을 시행하였다

####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제1조 축음기 「레코드」의 제조, 수입, 이입(移入)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1. 주소 및 성명
2. 제조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서울: 민속원, 1998), 13쪽.

22) 「인도의 밤 압수」, 『동아일보』, 1932년 10월 7일자; 조선총독부경무국, 「축음기 레코드의 취체」, 『조선경찰개요』(경성: 조선총독부경무국, 1940), 94쪽.

3. 제조, 수입, 이입 또는 판매하는 축음기 「레코드」의 종류 제2조 판매 또는 공중이 청취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축음기 「레코드」를 제조 수입 또는 이입하는 자는 제조, 수입, 또는 이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주내용의 해설서 2부를 첨부하여 그 종류 명칭 수량을 소관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제3조 전2조의 신고는 관할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이를 한다.

제4조 축음기 「레코드」가 치안을 해치거나 또는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지사는 그 제조, 판매, 수여 또는 연주의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다.

제5조 제1조 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1933년 6월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sup>23)</sup>

<레코드취체규칙>은 음반의 제조·수입·이입·판매를 통제하고자 한 법령이었다. 레코드 제작 및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레코드의 종류·명칭·수량·해설서 등을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여 제작 및 유통 업자를 통제 관리한 것이다. 신고는 도지사에게 하게 되어 있지만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통제 관리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취체규칙의 검열 기준은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이었다. 취체 사유 중 사상의 검열이 목적이었던 치안방해 외에 풍속괴란도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 것으로, 음반의 취체는 사회 통제에 목적이 있었다.

<레코드취체규칙>은 새롭게 출판되는 음반뿐만 아니라 이미 출판되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음반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취체규칙이었

23) 「부령 제47호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33년 5월 22일자, 제 1909호.

다. 유통되는 것 중 행정 처분된 음반의 재고는 전부 압수하였고,<sup>24)</sup> 취체 처분된 음반은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이미 음반을 구입한 자라도 공개적인 음반의 감상 행위는 금지되었다.<sup>25)</sup> 특히 혁명가를 수록한 음반은 적색음반(赤色音盤)으로 분류되어 행정 처분되었다.<sup>26)</sup>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검열제도는 강화되어, 치안방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과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곡도 ‘풍속괴란’으로 금지하였다.<sup>27)</sup> 이러한 조치는 사랑·연애 등의 감정을 드러내는 노래가 전시 하에서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대신 군가풍의 노래가 권장되었는데, 전시 체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후 5시가 되기 전 다방이나 식당, 카페에서 회상적이고 감상적인 유행가는 걸어서는 안 되었으며, 이에 반해 총후(銃後)의 사기를 돋우는 일본 군가는 허락되었다.<sup>28)</sup>

일제가 우리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는 학자적 양심의 연구도 있겠지만,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한국 전통문화 연구가 대다수였다. 노래에 있어서도 일제는 민족전통노래를 부르고 감상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 그것의 연구 목적은 허가하였다.<sup>29)</sup>

24) 「레코드의 공포시대, 去 27일 장연(長淵)에서 취체, 『조선일보』, 1933년 10월 1일자.

25) 「성진에서도 레코드 압수, 『조선일보』, 1933년 7월 12일자.

26) 「적색음반 수종을 압수, 『조선일보』, 1933년 7월 20일자.

27) 「연애행진곡 금지 에로틱한 도시레코드 제작판, 『동아일보』, 1934년 5월 25일자; 「풍교(風敎)상 불미의 레코드 발금(發禁), 『동아일보』, 1936년 7월 5일자; 「저급 레코드 16종에 행정처분, 『동아일보』, 1936년 8월 5일자; 「악성 유행물 전성(全盛), 사회교화상 대문제, 영화, 레코드 취체강(取締綱)을 강화, 『동아일보』, 1937년 6월 9일자; 「풍속치안방해로 압수 8천매, 노래도 너무 에로틱하면 질색, 『동아일보』, 1937년 6월 9일자; 「나는 행복이여요 압수 레코드 취체강화, 『동아일보』, 1938년 2월 27일자; 「퇴폐기분 도발하는 불량 레코드 검색, 『동아일보』, 1939년 4월 3일자; 「불온 레코드 간행취체, 『동아일보』, 1939년 8월 22일자.

28) 「적국의 음반 섬멸, 『매일신보』, 1941년 12월 30일자.

29) 「우복가반(又復歌盤) 압수 이번에 범벅타령, 『조선일보』, 1933년 10월 4일자.

음반의 판매금지 및 압수 조치는 노래의 금지 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즉 음반만의 금지 조치도 있었지만, 노래의 출판, 교육, 공연, 가창 등이 금지되면 그 노래가 수록된 음반도 동시에 행정 처분되었다. 일제 초기의 금지된 노래들은 교과용 노래, 동요, 애국계몽가 등 창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레코드취체규칙>의 시행 이후에는 유행가들이 금지곡의 주류를 이루었다.

<표 2>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지된 노래><sup>30)</sup>

금지레코드	처분년도	처분사유	음반사
국경의 애곡(哀曲)	1933. 6.13	치안방해	포리돌 19029, A
아리랑	1933. 6.13	치안방해	콜롬비아 400070
인도(印度)의 밤	1933. 6.13	치안방해	콜롬비아 40334, A
한숨고개	1933. 6.22	치안방해	세이론 제1-A
우크라이나혁명가	1933. 7.17	치안방해	-
독일공산당청년가	1933. 7.17	치안방해	-
장한가(長限歌)	1933. 8.3	치안방해	오케 1509-B
고국이 그리워	1933. 8.29	치안방해	세이론 66. B
한양의 사계	1933. 9.9	풍속괴란	빅타 49204, B
잡가 백주(白酒)의 노래	1933. 9.	풍속괴란	-
잡가 범벅타령	1933. 9.14	풍속괴란	세이론 127
방랑인	1933. 9.1	치안방해	포리돌 19045, A
폐허에서	1933. 9.1	치안방해	포리돌 19045, B
신민요 변조아리랑	1933. 9.9	치안방해	빅타 49204, A
신민요 동대문타령	1933. 10.28	치안방해	빅타 49183, A
경기잡가 신고산	1933. 11.2	풍속괴란	빅타 49066
경기잡가 날너지아	1933. 11.2	풍속괴란	빅타 49066
평양잡가 재담잡봉가(才談雜逢歌)	1933. 11.7	풍속괴란	빅타 49011, A
평양잡가 이화타령	1933. 11.7	풍속괴란	빅타 49011, B
비상시음두(非常時音頭)	1933. 11.22	치안방해	넛도 6254, B
방아타령	1933. 12.5	치안방해	빅타 49100
춘향전 자진사랑가	1933. 12.12	풍속괴란	세이론 44, B
춘향전 정자의 노래	1933. 12.5	풍속괴란	세이론 76, A
서도민요 사설난봉가	1933. 12.5	풍속괴란	빅타 49070, B

30) 출처: 『엇더한 레코드가 금지를 당하나』, 『삼천리』, 1936년 4월호; 『매일신보』(1910- 1945); 『조선일보』(1920-1940); 『동아일보』(1920-1940).

금지레코드	처분년도	처분사유	음반사
뜻(志)	1933. 12.27	치안방해	콜롬비아 40074, B
서울노래	1934. 4.19	치안방해	콜롬비아 40508, B
경기잡가 사설난봉가	1934. 7.10	풍속괴란	리갈 C 136, B
연애행진곡	1934. 5.22	풍속괴란	도시 107
조선아잘 있거라-리차드 최	1934. 5.10	치안방해	콜롬비아 40511, A
조선행진곡	1934. 7.10	치안방해	포리돌 19028, A
부세(浮世뎡세상)	1934. 8.23	치안방해	콜롬비아 40305, A
종로네거리	1934. 8.28	치안방해	콜롬비아 40270, A
조선의 노래	1934. 9.20	치안방해	콜롬비아 40344, A
경기잡가 장기타령	1934. 10.5	풍속괴란	콜롬비아 40297, B
우리네의 노래	1934. 10.22	치안방해	콜롬비아 40398, A
앞남산에 올라서	1934. 12.4	풍속괴란	-
이역(異域)의 우는 꽃	1934. 12.4	치안방해	-
서울떠기	1934. 12.4	풍속괴란	-
항적가(抗敵歌)	1935. 7.25	치안방해	빅타 54514, B
마지막의 노래	1935. 6.18	치안방해	포리돌 19202, A
가애한 수병(可愛水兵)	1938. 2.	-	-
내가 만약 바다에서 싸운다면	1938. 2.	-	-
전화일기(電話日記)	1938. 2.	풍속괴란	-
나는 행복이어요	1938. 2.	풍속괴란	-
전장에 밤이 오면	1938. 2.	-	-
울지마라 아가야	1939. 6.	-	-
아주머니 당신은 힘춧습니다	1939. 6.	-	-
봄비초지(春雨草紙)	1939. 6.	-	-
황성엠티	1934. 6.	치안방해	-
봄노래부르자	-	-	-
목포의 눈물	-	-	-
눈물젖은 두만강	-	-	-
꿈꾸는 백마강	-	-	-

\* (-)표는 미상 표시임

### 2.3. 종교 음악의 통제

일제는 종교 통제와 함께 종교 음악도 통제하였다. 일제는 1939년 제 74회 제국의회에서 법률 제77호로 <종교단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주 대상은 외국 선교사가 중심인 기독교

교였다. 조선총독부는 일찍이 1915년 <포교규칙>(布教規則)을 발표하여<sup>31)</sup> 조선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나, 1919년 3·1운동 이후 총독부와 선교사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기독교만은 교회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sup>32)</sup> 그러나 1939년 종교단체법이 시행됨으로써 교회의 설립은 다시 허가제로 환원되었고, 교역자의 자격까지도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심지어 교규(教規)와 종제(宗制) 등도 허가를 받아야만 해 기독교의 외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까지 통제하여 기독교 본질의 변질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일본적 기독교의 수립’이란 구호 아래 본격적인 기독교 통제에 나섰다.<sup>33)</sup> YMCA는 일본YMCA에 종속되었고, 기독교연합공의회는 해산되고 친일 기구인 조선기독교연합회로 대체되었다.<sup>34)</sup> 1943년 5월 장로교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같은 해 8월 감리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3년 5월 침례교인 동아기독교가, 12월에 안식교와 성결교가 해체되었고, 기타 교단들은 1945년 7월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으로 전부 통합하여 일본 교회에 예속되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한국 기독교의 교단 체제가 일본적 기독교화되는 가운데, 찬송가에도 통제의 손을 뻗었다. 일제의 찬송가에 대한 통제는 1938년 2월 조선총독부의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찬미가, 기도문, 설교 등으로서 그 내용이 불온한 것에 대하여는 출판물의 검열 및 임감(臨監) 등에 의하여 엄중 단속할 것.”<sup>35)</sup>

31) 「포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8월 16일자, 제911호.

32)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서울: 한길사, 1980), 87쪽.

33) 일본적 기독교의 수립이란, 기독교를 일제의 국책에 따르게 일본화하는 기독교의 변질을 의미한다.

34) 「조선기독교연합회 결성식」, 『조선감리회보』, 1938년 7월 16일자, 제6권 제14호.

1940년에는 지도대책을 강화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을 마련하였고, 여기에도 찬송가의 단속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성서 찬송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아울러 일요학교 교과서 기타 각 파의 출판물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속을 할 것.”<sup>36)</sup>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조치 발표 후, 각 교단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찬송가집을 검토하여, 국체에 위배되는 가사 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찬송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감리교는 1941년 4월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의 제1회 총회에서 국체에 어긋나는 찬송가의 삭제를 결의하였고,<sup>37)</sup> 11월에는 감리교 찬송가집인 『신정찬송가』 중 국체에 위배되는 곡과 부분의 수정 공고를 냈다.<sup>38)</sup> 1942년 4월에는 『신정찬송가』 중 그 동안 임시로 수정·삭제한 곡과 부분을 확정,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받아 금지곡과 부분 삭제 및 부분 수정할 곡을 공시하였다.<sup>39)</sup>

장로교는 1940년 11월 10일 <장로회지도요체>(長老會指導要諦)를 통하여 국체에 위배되는 찬송가의 수정을 발표했고,<sup>40)</sup> 1941년 10월 2일에는 장로교 찬송가집인 『신편찬송가』중 금지할 찬송가를 『장로회보』에 공시하였다.<sup>41)</sup> 1942년 1월 21일에는 『신편찬송가』중 조선총독부의

35) 김승태 편역,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심사참배 결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238쪽. (원전: 조선총독부경무국,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8).

36) 김승태 편역, 『조선에서의 기독교의 혁신운동』,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357쪽. (원전: 조선총독부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사상회보(思想彙報)』, 1940, 12, 제25호).

37) 『기독교조선감리교단 제1회 총회 결의문』, 『조선감리회보』, 1941년 4월 1일자, 제9권 제4호.

38) 감리교단본부, 『찬송가수정』, 『조선감리회보』, 1941년 11월 1일자, 제9권 제11호.

39) 『찬송가개정에 대하여』, 『조선감리회보』, 1942년 4월 1일자, 제10권 제3호.

40) 『일본적 기독교로 발족: 장로회지도요체』, 『매일신보』, 1940년 11월 10일자.

41) 덕천인파, 『긴급통고』, 『장로회보』, 1941년 10월 1일자, 제88호.

허락을 받은 금지곡과 부분 삭제 및 부분 수정할 곡을 공시하였고,<sup>42)</sup> 조선총독부의 출판 허락을 획득한 수정판 『신편찬송가』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1943년 5월에는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하면서 채택한 <실천요목>에서 단순히 찬송가의 수정·금지가 아닌 일본적 기독교 정신에 적합한 새로운 찬송가집의 편찬을 결의하였다.<sup>43)</sup>

검열을 통한 찬송가 가사의 수정의 특징으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호칭인 ‘만왕의 왕’, ‘왕의 왕’, ‘만유의 주’, ‘만유의 주재’, ‘태평양’ 등의 칭호들이 일본의 현인신인 천황의 신성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수정토록 하였고, 민(民)이 일본의 신민(臣民)이라는 개념에 배치되기 때문에 ‘만민’은 ‘만인’으로, ‘만국’은 ‘모든’ 또는 ‘세상’으로, ‘백성’은 ‘사람’으로 수정토록 하였다.

#### 2.4. 공연 및 음악인의 통제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해인 1941년 12월 18일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등임시취체법>을 공포하여 식민지 조선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이전에 비해 공연 및 연예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는데, 1942년에는 악극단에 대한 각본의 사전 검열만으로는 공연의 효과를 알 수 없다 하여 공연 전 실연을 통한 검열을 실시했다.<sup>44)</sup> 1944년에는 이러한 공연의 취체를 강화하고자 5월 8일 부령 제197호로 <조선흥행등취체규칙>(朝鮮興行等取締規則)을 공포하여 영화, 연극, 가요 등 제 분야의 공연 활동을 통제했다.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총 46개조의 전문에 공연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였는데, 제25조에 각본의 사전검열, 공

42) 덕천인파, 「긴급통고문: 신편찬송가 정정 사용 주지의 건」, 『장로회보』, 1942년 1월 21일자, 제104호.

4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상치위원회의 전말」, 『기독교신문』, 1943년 10월 6일자, 제71호.

44) 「악극단에 자숙 강조」, 『매일신보』, 1942년 1월 10일자.

연의 사전 신고와 허가, 위반 시의 처벌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제23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지의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과거에도 시행해 온 것으로, <조선홍행등취체규칙>의 특징은 바로 ‘기예증’(技藝證)제도의 시행에 있었다. 기예증이란 공연예술인 허가증명서로,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 받은 자만이 공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공연예술인 자격증 제도였다.

<조선홍행등취체규칙>

제6조 본 령에 의하여 홍행자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 홍행을 할 수 없다.

제14조 본 령에 의해 기예자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상연에서 직업으로서 기예를 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의 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제15조 1. 기예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주 취업지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본적·주소·성명(업무상의 성명이 있을 때는 그 성명도 기재할 것), 생년월일
- ② 기예의 종류
- ③ 극단, 연예단 또는 관물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전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① 이력서
- ②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자가 발행한 증명서
- ③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그 친권자 또는 친권자에 대신하여 감독하는 자, 처(妻)일 때는 부(夫)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 중인 자일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주 취업지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6조 도지사는 제14조의 허가를 할 때는 양식 제2호의 기예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9조 본 령에 의하여 연출자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상연에서 업으로 연출을 할 수 없다.

제34조 행정관청은 당해 관리로 하여금 상연 또는 흥행을 하는 장소에 임검(臨檢)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sup>45)</sup>

이처럼 기예자뿐만 아니라 연출자, 흥행자 할 것 없이 공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통제하였다. 이는 작품(노래) 통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공연의 주체인 예술인 자체를 통제하는 이중 장치였다. 즉 공연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공연 출연자가 기예증 소지자이어야 공연의 허락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공연예술인들은 공연 활동을 위해 봄·가을로 연 2회 시행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기예증을 받아야만 했다. 음악기예증의 시험은 1941년 1월 조선총독부의 관변 음악 단체로 조직된 조선음악협회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위임받아 행하였고, 시험과목은 일본어, 전공실기, 구슬시험 등이었다.<sup>46)</sup> 구슬시험은 전시체제 하에서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아무리 전공실기 기량이 뛰어나도 사상불온으로 낙인찍히면 불합격되었다. 제1회 음악기예자 자격시험은 1944년 8월 16, 17일에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8백여 명의 음악인이 응시했다.<sup>47)</sup> 기예증제도의 시행 이후, 악극단은 공연의 허가를 위해 기예증 소지자를 광고를 통해 모집하기도 했고,<sup>48)</sup> 기예증을 받은 예술인들은 전쟁에서의 각종 징집 제외를 조건으로, 일제 정책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원, 이용되었다.

45)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44년 5월 8일자, 제5174호.

46) 「음악가에 기예증 교부코저 자격시험」, 『매일신보』, 1944년 8월 6일자.

47) 「남녀 8백명 참가 음악기예자 자격시험」, 『매일신보』, 1944년 8월 17일자.

48) 「가극 여자 기예자 모집」, 『매일신보』, 1945년 5월 10일자.

## 25. 학교음악교육의 통제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병합이 이루어지자 1911년부터 45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제정·공포했다. 조선교육령은 교육을 식민지 통치 차원에서 이용한 일제의 통치정책이었다. 조선교육령에 의한 교과서 제도를 보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 내지 조선총독부의 검정 및 인가를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교과서 제도가 노래 통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음이 드러난다. 교과서의 통제 이유는 공립학교는 물론 교육과정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립학교를 통제하여 식민지 교육정책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검정인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립학교의 음악교과서의 사유 중 치안, 치안방해, 불온, 비밀출판 등이 말해 준다. (표1 참조) 한일병합 이후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기(1911-1945)>의 교과서 통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1911. 11.1-1922. 3.31)는 조선의 교육을 일본식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교육 방침은 덕성의 함양과 제국신민다운 자질과 품성의 육성에 있었다. 1911년 10월 22일 부령 제114호로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제9조에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 또는 검정·인가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49)</sup> 조선총독부의 인가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내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에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불인가(不認可), 발매반포금지, 금지 처분된 음악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sup>50)</sup>

小出雷吉·笹山章, 『조선지리창가(朝鮮地誌唱歌)』(1912).

49) 「부령 제114호 사립학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20일, 號外.

50)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1915), 개정9판, 14쪽.

- 불인가<sup>51)</sup>  
田村虎藏·納所辨次郎·佐々木吉三郎,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學唱歌)』, 12권.
- 발매반포금지<sup>52)</sup>  
명동예수교회, 『신찬창가집(新纂唱歌集)』(1913).
- 금지처분<sup>53)</sup>  
한영서원, 『창가집』(1915).

『심상소학창가』 12권은 통감부 때에 사용되던 일본의 국정교과서임에도 불인가된 것을 보면, 한일병합 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식민지 정책에 부적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 4.1-1938. 3.31)는 제1차 교육령기의 무단정치 시기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 시기로, 일본의 교육제도에 준거하여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즉 조선인을 일본 신민(臣民)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식민지 정책이 반영되어, 국민 사상을 기르고 국어(일본어)를 습득시키기 위한 정책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명칭도 일본어 사용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미사용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그 명칭을 구별했다. 특히 1차 교육령기와 달리 보통학교의 창가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개정되었다. <보통학교 규정> 제61조에 의하면, “보통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보통학교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항의 교과용 도서가 없는 때에는 문부성에서 저작권을 가진 소학교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과용 도서 또는 전항의 교과용 도서가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수종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도지사가 채정(採定)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51)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1912), 개정6판, 49쪽.

52)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1915), 개정9판, 59쪽.

53) 경기도 경무부보고, 「경고기발(警高機發)」 제527호, 불온자발건처분 1건, 1915년 11월 13일 「경기지방법원 형사부 재판기록」(1917년 9월 5일); 「한영서원 학생 30명을 포박, 창가를 출판한 혐의」, 『신한민보』, 1917년 4월 5일자.

고 있다.<sup>54)</sup> <고등보통학교규정> 제25조와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제31조에는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서는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교(고등여학교)의 교과서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교과서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55)</sup>

제3차 조선교육령(1938. 4.1-1943. 3.31)은 1937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선이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화(兵站基地化)하면서 전시체제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버린 시기이다.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필두로, 내선일체(內鮮一體), 국체명징(國體明徵), 인고단련(忍苦鍛鍊) 등의 강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를 반영하듯 조선총독부의 <소학교규정> 제26조, <중학교규정> 제22조, <고등여학교규정> 제26조, <사범학교규정> 제24조에는 공통적으로 “노래 가사는 황국신민다운 정조(情操)를 함양하기에 적절한 것을 취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sup>56)</sup> 이는 의식창가(儀式唱歌)와 모든 창가 가사의 일본어화를 통해 적용되었다. 소학교(小學校) 교과서의 채용에 대해서는 <소학교규정> 제77조에 “조선총독부 또는 문부성 선정에 의한 것, 도지사가 채용한 것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중에서 있는 것 및 그 채용소학교와 특히 관계있는 것으로 하여 도지사가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것 외에는

54) 「부령 제8호 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15일, 제2850호.

55) 「부령 제16호 고등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20일, 제2854호 ;

「부령 제14호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17일, 제2852호.

56) 「부령 제24호 소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자, 號外; 「부령 제25호 중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자, 號外; 「부령 제26호 고등여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자, 號外; 「부령 제27호 사범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자, 號外.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sup>57)</sup> 또한 <중학교규정> 제28조와 <고등여학교> 제40조에는 “교과서는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 또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것 중에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일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sup>58)</sup>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 4.1-1945. 8.15)는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사회 전반이 전시 체제로 돌입한 시기로, 교육이 군국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한 시기다. 이 시기에 소학교 제도가 국민학교 제도로 바뀌었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인격 함양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교과서의 창가 선택 기준은 국가적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했다.<sup>59)</sup> 때문에 군국주의 교육을 위한 행진곡이나 시국관련 노래, 축제일창가, 의식창가 등 일본 정신을 드러내는 노래들이 수록되었다. <국민학교규정> 제54조, <중학교규정> 제13조, <고등여학교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부 및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전항에 규정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sup>60)</sup>

일제의 음악교육정책은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음악에 정서화되는 황음화(皇音化)에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음악교과서의 통제가 중요했고,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음악교과서의 검인정 기준은 일본 신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이나 정서함양 그리고 국체의 부합에 있었다.

57) 「부령 제24호 소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자, 號外.

58) 「부령 제25호 중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 제3346호; 「부령 제26호 고등여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 제3346호.

59) 八東周吉, 『朝鮮國民學校敎則の實踐』(東京: 日本出版社, 1941), 246쪽.

60) 「부령 제90호 국민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1년 3월 31일, 제4254호; 「부령 제58호 중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3월 27일, 제4844호; 「부령 제59호 고등여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3월 27일, 제4844호.

### 3. 간접 통제 장치로서의 국민가요운동

통제의 개념을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주체가 의도하고자하는 의식을 대상에게 주입하여 인식을 바꾸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면, 음악의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통하여 통제된 것 외에도, 일제가 의도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소통시킨 행위도 음악 통제의 한 장치로 보아야 한다. 곧 일제강점기에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가 있었던 반면 부르도록 권장한 노래가 있었고, 권장곡은 일제에 의해 국체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노래였다. 일제의 강요 성격을 띤 권장곡은 ‘시국가’, ‘애국가’, ‘건전가요’, ‘국민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는 사회적 학습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일제는 30년대 말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관여하여 조선과 일본의 문예인이 발족한(1937. 5. 2) 조선문예회를 통하여 건전가요운동을 전개한다. 당시 조선 사회와 음악계는 유행가를 예술음악과 대비하여 좋지 않은 음악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1920년대 피아니스트 김영환(金永煥, 1893-1978)은 당시 학생들이 유행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좀더 조출해 보이고 좀더 고상한 취미를 가짐직한 여학생들이 조출하지 못한 야비한 노래를 입에 올리는 것은 물론 조처 못한 일입니다 … 학교에서 가르키는 창가와 순예술로 교수하는 음악과는 구별하여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해는 잇슬망정 리익은 업슬 것이니 노래를 부르되 좀더 취미를 높혀가기를 바랍니다.”<sup>61)</sup>

뿐만 아니라 연악회(研樂會)의 홍난파(洪蘭坡, 1898-1941), 소프라노 한기주(韓琦柱), 이화학교 음악교수 김애리시 등이 유행가를 천박하고

61) 김영환, 「학교당국을 책망하시오」, 『신여성』(1924), 6월호, 47쪽.

조아하며 음탕한 음악으로 비판하였다.<sup>62)</sup>

이러한 사고는 30년대에 더욱 강화되었는데, 1933년 『신가정』에 발표된 「유행가와 각계 관심」이라는 글에서 교육계, 학부형, 음악가 등 각계가 전반적으로 유행가를 비판하고 있다.<sup>63)</sup> 교육자인 이만규(李萬珪)는 조선의 유행가는 그 내용이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도움 되고 감정에 맞도록 지어서 널리 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sup>64)</sup> 학부형인 김창제(金昶濟)는 창가의 사연과 곡조가 너무 추잡하거나 비애 또는 음탕하면 아이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줌으로 유행가를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sup>65)</sup> 또한 음악가인 현제명(玄齊明, 1902~1960)은 조선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보면 좋은 노래도 없지 않으나 다수가 야비한 가사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sup>66)</sup>

1935년의 『신가정』에도 유행가에 대한 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담은 「째즈나 유행곡이 일반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는데,<sup>67)</sup> 당시 음악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홍난파도 유행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의 소위 유행가라는 것은 대부분이 가정이나 사회의 교화상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곡조에서 보더라도 그 노래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도 감상적이며 퇴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민중의 정도가 조금씩 향상된다면

62) 홍난파, 「혜는 잇슬지언정 리익은 업습니다」, 『신여성』(1924), 6월호, 49-49쪽; 한기주, 「일종의 군-소리갯지요」, 『신여성』(1924), 6월호, 49-50쪽; 김에리시, 「갯득이나 탕일(蕩逸)한 음악뿐었는데」, 『신여성』(1924), 6월호, 51쪽.

63) 「유행가와 각계관심」, 『신가정』(경성: 동아일보사, 1933), 2월호, 78-85쪽.

64) 이만규, 「유행가와 각계관심: 교육자로서의 관심」, 『신가정』(1933), 2월호, 78쪽.

65) 김창제, 「유행가와 각계관심: 부형으로서의 관심」, 『신가정』(1933), 2월호, 82쪽.

66) 현제명, 「유행가와 각계관심: 음악가로서의 관심」, 『신가정』(1933), 2월호, 83-84쪽.

67) 「째즈나 유행곡이 일반가정에 끼치는 영향」, 『신가정』(1935), 8월호, 30-35쪽.

이 종류의 음악은 자연히 소멸되고 말 것이오.”<sup>68)</sup>

현제명도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유행가나 재즈가 일반 가정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고, 가정교육을 위해 유행가를 가정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체 유행가나 재즈는 외적 충동을 주는 음악이며 하등의 내적 감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엉덩춤이나 추고 억개나 어적 어적 짓는 아모 신비적 요소와 미적 순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소위 유행가라는 것은 곡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더욱이 그 가사를 본다면 패망(敗亡), 야비(野卑), 비인도적 문구를 니열하였고, 이것을 상품화시키려고 허화(虛華)한 대선전을 하고 있습니다.”<sup>69)</sup>

음악가 김(金)메리도 “지금 조선 안에 유행하는 노래는 거지만이 다 너무도 유흥적이고 음탕하여 아모런 예술적 가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sup>70)</sup> 유행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유행가는 야비한·음탕한·비천한·패망한·퇴폐적인·조아한·비인도적·무질서한 등의 형용사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반면, 예술음악은 도덕적인·깨끗한·고상한 등의 용어로 대비시키었다. 이러한 음악계의 사고는 낭만주의 미학관이 적용된 순수음악주의였다. 음악은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하며, 도덕적이고 건전해야하는 그 무엇이였다. 때문에 당시 대중이 향유한 유행가는 비판의 대상이였

68) 홍난파, 「재즈나 유행곡이 일반가정에 끼치는 영향: 사회 교화상 폐해불무(弊害不無)치만」, 『신가정』(1935), 8월호, 31쪽.

69) 현제명, 「재즈나 유행곡이 일반가정에 끼치는 영향: 패망 야비 비인도적(敗亡 野卑 非人道的)」, 『신가정』(1935), 8월호, 32쪽.

70) 김메리, 「재즈나 유행곡이 일반가정에 끼치는 영향: 좋지 못한 레코드를 트러 노으면 남의 집 애라도 귀 막어주고 싶다」, 『신가정』(1935), 8월호, 33쪽.

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관은 조선문예회의 발족에 관여한 조선총독부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다음은 1937년 조선문예회 조직에 즈음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의 담화문이다.

“조선서 내선인(內鮮人) 문예가중 권위자를 망라하여 처음에는 규모가 작고 사업의 범위가 좁더라도 실제적으로 일을 하여 가게끔 하려는 것이다. 레코오드, 기타, 각종 비속한 가곡이 가두에 가득 하여 사회풍교상 악영향을 미치는 바 많으므로 이것을 선도하여 사회풍교의 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장차는 연주, 영화, 기타 문예와 연예의 각 방면에 진출을 하여 실제적으로 교화선도운동을 일으킬 터이다.”<sup>71)</sup>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조선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선보급기지인 ‘총후’로 구축하면서, 조선인에게 총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래를 활용하였다. 곧 일제는 노래의 건전성을 강조하여 총후의 노래들을 창작하여 보급하는 한편, 노래에 대한 단속기준을 한층 강화하였다. 조선문예회의 첫 사업은 가요정화운동이었는데, 이는 저속한 유행가를 배격하고 건전한 신가요를 제작 보급하여 사회교화를 꾀하는 노래운동이었다. 이에 따라 1937년 7월 11일 제1회 신작가요발표회가 개최됐는데, 이때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의 김대우(金大羽) 사회교육과장은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예전반에 공한 광범위의 활동은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시기상조의 느낌이 있으므로 문예회의 첫사업으로 위선 가요방면에 손을 대인 것입니다. 압호로는 건전한 새로운 가요의 창작을 장려식힘은 물론 조선교악의 연구, 우수가요의 현상모집 등을 행하여 이것

71) 노동은,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낭만음악』(서울: 낭만음악사, 1989), 가을호, 제1권 제4호, 35쪽에서 재인용.

을 「레코드」 「라디오」 등으로 철저히 보급시켜 생활에 필요한 민중에게 위안을 주는 동시에 정신생활을 윤택케하고 한거름 나아가서는 국민정신의 작흥 국체관념명증(國體觀念明徵)에 일조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sup>72)</sup>

곧 조선총독부의 교화선도운동과 당시 음악계 지배 계층의 건전교화 사상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조선문예회에 참여한 음악인은 현제명·홍난파·이면상(李冕相)·박경호(朴景浩)·이종태(李鍾泰)·김영환·윤성덕·함화진(咸和鎭)·하규일(河圭一) 등이었다. 결국 음악계의 순수음악주의는 일제의 식민지 체제 강화를 위한 가요정화운동에 충실히 봉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1938년 매일신보사는 국민가요를 현상공모하였고, 이에 응모된 총 9백여 편 중 <반도청년 애국행진곡>과 <애국행진>의 두 편을 당선작 없이 선외佳作(選外佳作)으로 선정하여 국민가요 보급운동을 전개했으며,<sup>73)</sup>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근로보국의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여 학생근로대(學生勤勞隊)의 근로보국운동을 고양시켰다.<sup>74)</sup> 뿐만 아니라 1942년 12월 11-13일에 조선총독부·조선군사령부·매일신보사의 후원으로 개최된 조선음악협회 주최 제1회 조선음악경연대회는 성악부문에서 예선과 본선 과제곡으로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노래로 지정하는 등 군국가요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선과제곡 : <興亞行進曲>(福井文彦), <愛國의 花>(古關裕而)  
 <불타는 大空>(山田耕筰), <太平洋行進曲>(海軍省選定)  
 본선과제곡 : <海ゆかば>(信時潔), <大日本の 歌>(東京音樂學校)  
 <海の 津軍>(古關裕而), <愛馬의 進軍歌>(陸軍省選定)<sup>75)</sup>

72) 「조선문예회신작가요발표」, 『매일신보』, 1937년 7월 12일자.

73) 「국민가요 선외佳作 발표」, 『매일신보』, 1939년 1월 26일자.

74) 「근로보국의 노래, 총독부 학무국에서 만드러」, 『매일신보』, 1938년 7월 23일자.

75) 「음협 주최 음악경연회」, 『매일신보』, 1942년 9월 19일자.

일제는 방송을 통해서도 국민가요의 보급을 시도했는데, 조선방송협회는 전시동원체제를 찬양한 노래들을 모아 『가정가요 제1집』이란 이름으로 노래책을 발행하고, 방송을 통하여 보급하였다.

<표 3> 조선방송협회의 『가정가요 제1집』

작곡자/작사자	곡 명
김성태/과 인	즐거운 우리집
김성태/이서구	푸른 하늘
박경호/이서구	가을거디
박태준/이광수	지원병 장행가
이면상/박월탄	달마지
이홍렬/양주동	어머니의 마음
임동혁/이광수	애국일의 노래
현제명/김안서	눈오는 밤
홍난파/김안서	산에 들에
홍난파/이광수	희망의 아침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2년 2월에 국민가곡 가사현상모집을 한 후, 당선작 <일역의 결의>, <대동아 결전의 노래>, <총후반도의 노래> 등을 히라마 분쥬, 박경호, 오오바 이사노스케 등에게 작곡을 의뢰하고, 전국학교와 방송을 통하여 지도 보급하였다.<sup>76)</sup> 뿐만 아니라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가창지도대’를 운영하여 공장, 학교, 광산 등의 현장을 찾아 음악회를 열고, 『국민가집-우리들의 노래』, 『국민가요명곡집』 등 건전가요 노래책을 보급, 지도하는 ‘국민개창운동’을 전개하였다. 곧 일제에 의해 전개된 일련의 가요정화운동과 국민개창운동은 노래를 통한 식민지 체제 교화운동으로, 교묘한 간접적 음악 통제장치였던 것이다.

76) 「연맹문화부 모집 국민가 당선자 발표」, 『매일신보』, 1942년 2월 23일자.

#### 4. 맺는 글

지배 체제에 의해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노래는 두 가지의 유형 중에 하나를 취한다. 첫째는 당대의 사회가 가진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에 위배되는 노래로 이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 퇴폐라는 사유가 붙는다. 둘째는 그 사회의 지배 체제에 위배되거나 가치 기준을 깨뜨리는 노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음악 통제는 외적으로 첫째 유형으로 통제되었지만, 실제로는 둘째 유형의 형태를 취하였다. 곧 일제는 노래가 시대와 사회의 반영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통제’라는 틀로 묶어버린 것이다.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했는데, 법률·칙령(勅令)·제령(制令)·부령(府令)만도 36년간 1만여 개나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노래책, 음악공연, 레코드, 음악가, 종교음악, 학교음악교육 등 음악 활동 전 영역에 걸쳐 총체적인 음악 통제를 시행했다. 노래책의 통제 장치로는 1908년 9월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1909년 2월 법률 제6호 <출판법>, 음악 공연의 통제 장치로는 1910년 8월에는 경령(警令) 제3호 <집회취체령>과 1944년 5월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음악인의 활동 통제 장치로는 기예증제도, 레코드 통제 장치로는 1933년 5월 부령 제47호 <레코드취체규칙>, 교회음악 통제 장치로는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 학교음악교육 통제 장치로는 <조선교육령> 등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음악 통제와 관련된 종합적 통제 장치로 1912년 3월 부령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 1925년 4월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1938년 5월 칙령 제316호 <국가총동원법>, 1941년 12월 법률 제97호 <언론출판집회결사등임시취체법> 등을 시행하였다.

음악 통제의 처분 사유로는 ‘치안’·‘치안방해’·‘풍속괴란’ 등이 있었는데, 치안 및 치안방해의 사유로 금지된 노래들이 다수여서 일제의

노래에 대한 통제가 식민지 통제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한다. 주로 통제된 노래는 조선의 민족적 전통과 정신(혼과 열)을 담은 노래,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항일노래와 반일노래,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프롤레타리아노래 등이었다.

일제는 검열에 의한 직접적인 음악 통제 외에도 식민지 지배를 위해 자신들이 의도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소통시켰다. 이는 일제에 의해 국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노래들로, ‘시국가’, ‘애국가’, ‘건전가요’, ‘국민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가요정화운동, 국민개창운동 등을 통하여 체제에 비판적인 노래를 대체시키는 역할을 했다. 곧 일제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는 검열을 통하여 금지시켰고, 자신의 국체에 부합되는 노래는 부르도록 권장하는 등 두 가지의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음악을 통제했으며, 그 의도는 식민지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 검색어 : 음악검열, 노래검열, 금지곡, 레코드검열, 음악교과서검열, 공연검열, 기예증, 국민가요운동, 가요정화운동

## 참고문헌

### ■ 1차 자료<sup>77)</sup>

#### 관보

- 1907 「법률 제1호 신문지법」, 『대한제국관보』, 7월 27일자, 제3829호.  
 1907 「법률 제2호 보안법」, 『대한제국관보』, 7월 29일자, 제3830호.  
 1908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대한제국관보』, 9월 1일자, 제4165호.  
 1909 「법률 제6호 출판법」, 『대한제국관보』, 2월 26일자, 제4311호.  
 1910 「내부고시 제32호 중등장가」, 『대한제국관보』, 4월 19일자, 제4656호.  
 1910 「내부고시 제38호 악전교과서」, 『대한제국관보』, 4월 23일자, 제4660호.  
 1910 조선총독부관방(官房), 『各道長官ニ對スル總督訓示要領』, 10월 5일자.  
 1911 「부령 제114호 사립학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0월 20일, 號外.  
 1910-12 조선총독부, 『경무월보(警務月報)』, 경성 : 조선총독부경무국.  
 1912 조선총독부, 『경무취보(警務彙報)』, 경성 : 조선총독부경무국.  
 1912 「부령 제40호 경찰범처벌규칙」, 『조선총독부관보』, 3월 25일자, 제470호.  
 1915 「포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8월 16일자, 제911호.  
 1922 「부령 제8호 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2월 15일, 제2850호.  
 1922 「부령 제14호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2월 17일, 제2852호.  
 1922 「부령 제16호 고등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2월 20일, 제2854호.

77) 참고문헌의 배열에 있어 1차 자료는 역사적 추이를 살피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가나다순’이 아닌 ‘연도순’으로 배열하였다.

- 1925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조선총독부관보』, 4월 27일자, 제 3807호.
- 1933 「부령 제47호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蓄音機レコード取締規則)」, 『조선총독부관보』, 5월 22일자, 제1907호.
- 1936 「제령 제13호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 『조선총독부관보』, 8월 8일자, 제2872호.
- 1938 「부령 제24호 소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3월 15일자, 號外.
- 1938 「부령 제25호 중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3월 15일자, 號外.
- 1938 「부령 제26호 고등여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3월 15일자, 號外.
- 1938 「부령 제27호 사범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3월 15일자, 號外.
- 1938 「칙령 제315호 국가총동원법」, 『조선총독부관보』, 5월 10일자, 제3391호.
- 1941 「부령 제90호 초등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3월 31일, 제 4254호.
- 1943 「부령 제58호 중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3월 27일, 제4844호.
- 1943 「부령 제59호 고등여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3월 27일, 제 4844호.
- 1944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朝鮮興行等取締規則)」, 『조선 총독부관보』, 5월 8일자, 제5174호.

#### 신문

- 1896-1898 『독립신문』.
- 1907 「국채보상가」, 『대한매일신보』, 4월 14일자.
- 1907 「교가일치」, 『만세보』, 4월 26일자.
- 1907 「교가단속」, 『대한민보』, 7월 2일자.
- 1908 「논학교용가(論學校用歌)」, 『대한매일신보』, 7월 11일자.
- 1909 「교가단속」, 『대한민보』, 7월 2일자.
- 1909 「부적(不適)의 창가금지」, 『조달계보(調達季報)』, 경남일보사, 11월

20일자.

- 1910 「보통가편술(普通歌編述)」, 『황성신문』, 1월 9일자.
- 1910 「창가편간기(唱歌編刊期)」, 『황성신문』, 3월 17일자.
- 1915 「학도가」, 『신한민보』, 9월 16일자.
- 1917 「한영서원 학생 30명을 포박, 창가를 출판한 혐의」, 『신한민보』, 4월 5일자.
- 1920 「옥내(獄內)에서 불온창가 작자 불복 항소」, 『매일신보』, 4월 2일자.
- 1921 「여학생의 불온창가」, 『매일신보』, 4월 15일자.
- 1921 「근화창가 제1집」, 『동아일보』, 5월 11일자.
- 1921 「창가를 교수하고 구류열흘동안」, 『동아일보』, 5월 22일자.
- 1921 「직공과 경관 격투」, 『동아일보』, 6월 20일자.
- 1922 「조선어창가와 조선역사의 교수」, 『동아일보』, 9월 20일자.
- 1923 「불온창가」, 『매일신보』, 3월 12일자.
- 1923 「애국가로 경찰서」, 『조선일보』, 10월 2일자.
- 1923 「사회주의자를 지난 4일에 7명 검거해, 내용은 선전문과 혁명가 까닭」, 『조선일보』, 10월 8일자.
- 1924 「장흥에 압송, 불온창가를 교수한 혐의」, 『조선일보』, 11월 18일자.
- 1925 「김재문씨 방면 22일에」, 『조선일보』, 3월 24일자.
- 1926 「혁명가 고창한 여류악가(樂家) 검속」, 『조선일보』, 12월 9일자.
- 1927 「검속된 김강군 20일 구류 처치」, 『조선일보』, 5월 21일자.
- 1927 「불온창가 짓고 형평사원(衡平社員) 피검」, 『조선일보』, 6월 1일자.
- 1928 「숭전(崇專)학생을 구인, ‘동해물과 백두산이’ 문제」, 『조선일보』, 5월 1일자.
- 1928 「음악회도 금지」, 『동아일보』, 8월 18일자.
- 1928 「혁명가와 혁명문예를 가르친 탓, 교원 학생등 20명 피착(被捉)」, 『동아일보』, 12월 12일자.
- 1929 「신춘가극금지」, 『동아일보』, 2월 22일자.
- 1929 「피로연에 불른 창가가 불온하다는 문데로 단천서(端川署)에 3명 취조」, 『동아일보』, 3월 6일자.

- 1930 손메례, 「조선의 금주운동」, 『기독신보』, 4월 30일자.
- 1930 「야학교원검거」, 『동아일보』, 9월 9일자.
- 1930 「과역보교(過驛普校)교원 고흥서(高興署)에 피검」, 『동아일보』, 9월 17일자.
- 1930 「음악동화금지」, 『동아일보』, 11월 3일자.
- 1931 「당선창가 : 조선의 놀애」, 『동아일보』, 1월 21일자.
- 1931 「불온창가로 장씨를 검거」, 『조선일보』, 8월 16일자.
- 1931 「혁명가사건 2명은 방면」, 『동아일보』, 9월 3일자.
- 1931 「금주가 배부한 것을 출판법으로 취조」, 『동아일보』, 9월 9일자.
- 1931 「병영격문(兵營檄文)으로 경찰도 활동」, 『동아일보』, 9월 11일자.
- 1931 「청년 3명 검거 내용은 불온창가 선전혐의」, 『조선일보』, 11월 21일자.
- 1932 「불온창가 불르다 소년 5명 피검」, 『동아일보』, 1월 20일자.
- 1932 「불온창가사건 4명은 석방」, 『동아일보』, 1월 27일자.
- 1932 「불온창가로 구류」, 『동아일보』, 2월 2일자.
- 1932 「결혼식장에서 불온한 창가, 6명에 구류처분」, 『매일신보』, 7월 2일자.
- 1932 「불온창가로 목동이 피검」, 『동아일보』, 9월 24일자.
- 1932 「레코드 ‘인도의 밤’ 경찰이 압수」, 『매일신보』, 9월 30일자.
- 1932 「‘인도의 밤’ 압수」, 『동아일보』, 10월 7일자.
- 1933 「레코드취체안 도서과서 입안중, 치안방해물은 금단」, 『조선일보』, 5월 3일자.
- 1933 「불온레코드를 철저히 취체한다」, 『매일신보』, 5월 3일자.
- 1933 「레코드 판매 년 200만매, 풍속 괴란과 치안 방해 등 취체규칙 제정 중」, 『조선중앙일보』, 5월 10일자.
- 1933 「레코드취체규칙을 발표, 6월15일부터 시행」, 『동아일보』, 5월 23일자.
- 1933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을 제정」, 『매일신보』, 5월 23일자.
- 1933 「레코드업자 소환하야 간담, 去 29일 본정서 고등계에서」, 『조선

- 일보』, 5월 30일자.
- 1933 「홍남경찰의 레코드취체, 來 15일부터」, 『조선일보』, 6월 13일자.
- 1933 「레코드취체부령 去 15일부터 실시, 시행 초일은 계출전무(屆出全無)」, 『조선일보』, 6월 17일자.
- 1933 「불량 레코드와 그 영향」, 『매일신보』, 6월 17일자.
- 1933 「전주에서도 레코드취체, 수종(數種)을 압수」, 『조선일보』, 6월 20일자.
- 1933 「평양서도 레코드취체」, 『조선일보』, 6월 22일자.
- 1933 「개성서도 레코드취체」, 『조선일보』, 6월 23일자.
- 1933 「축음기 소리판 6종 6만매 압수, 레코드취체규칙의 실시로, 경찰 당국 취체 엄중」, 『조선중앙일보』, 6월 24일자.
- 1933 「성진(城津)에서도 레코드압수, 去 7일에」, 『조선일보』, 7월 12일자.
- 1933 「적색음반(赤色音盤) 수종(數種)을 경무국에서 압수」, 『조선일보』, 7월 20일자.
- 1933 「반전데이 앞두고 취체가 더욱 엄중, 악기점까지도 뒤져 레코드까지 취체한다」, 『조선중앙일보』, 7월 23일자.
- 1933 「아리랑 등 4종압수, 레코드취체규칙 제정 이후 3천매처분, 전부가 사상 문제관계」, 『동아일보』, 9월 13일자.
- 1933 「가반처분빈빈(歌盤處分頻頻), 9월 14일부터 경무국도서관에서 시에론, 콜롬비아 회사 것을 또처분」, 『조선일보』, 9월 17일자.
- 1933 「빅타가반(歌盤)압수 24일 개성서」, 『동아일보』, 9월 30일자.
- 1933 「레코드의 공포시대, 去 27일 장연(長淵)에서 취체」, 『조선일보』, 10월 1일자.
- 1933 「우복가반(又復歌盤)압수, 이번엔 범벅타령」, 『조선일보』, 10월 4일자.
- 1933 「가반(歌盤)4종에 우부발금령(又復發禁令), 풍속괴란이 증가」, 『조선일보』, 12월 10일자.
- 1934 「압수당한 소리판엔 치안방해가 수위 몰수당한 것이 3천장이 되어 수난 1년의 레코드계」, 『동아일보』, 1월 10일자.

- 1934 「병어리된 소리판 44종 70매 치안방해 19, 풍속궤란 13」, 『동아일보』, 2월 2일자.
- 1934 「왜곡한 오락을 시정 레코드 면목일신」, 『매일신보』, 2월 2일자.
- 1934 「청소년 다수 검거, 불온창가 불른 것이 탄로」, 『조선일보』, 2월 11일자.
- 1934 「불온창가사건 25일간 구류처분」, 『조선일보』, 2월 15일자.
- 1934 「가정과 레코드, 가치있는 레코드를 선택하자」, 『조선일보』, 4월 15일자.
- 1934 「레코드 발매금지, 치안방해라고」, 『동아일보』, 5월 11일자.
- 1934 「‘리처드 최’ 소리판 압수, 콜롬비아사의 ‘조선아 잘있거라’를 치안 방해라하야」, 『조선일보』, 5월 11일자.
- 1934 「‘연애행진곡’ 금지 에로틱한 도시레코드 제작판」, 『동아일보』, 5월 25일자.
- 1934 「압수된 소리판 6월까지 9종류」, 『동아일보』, 7월 12일자.
- 1934 「차압된 레코드 44종 칠천매」, 『조선중앙일보』, 7월 12일자.
- 1934 「불량레코드 백여매를 압수, 去 15일부터 황해도 경찰부에서」, 『조선일보』, 8월 25일자.
- 1935 「개정출판법에 의하여 미농부문제처단(美農部問題處斷)」, 『매일신보』, 7월 27일자.
- 1935 「레코드 취체엄중, 불량한 것 천매 압수」, 『매일신보』, 8월 11일자.
- 1935 「치안방해되는 레코드 압수」, 『동아일보』, 8월 11일자.
- 1935 「치안방해로 압수된 레코드 천여 점, 금후도 철저 취체할 방침」, 『조선중앙일보』, 8월 11일자.
- 1936 「야학강습소 습격, 선생 생도 등 검거, 원인은 모종 불온창가 혐의인 듯」, 『조선중앙일보』, 3월 30일자.
- 1936 「의령 불온 창가사건」, 『조선중앙일보』, 4월 13일자.
- 1936 「풍교상(風敎上) 불미(不美)의 레코드 발금(發禁)」, 『동아일보』, 7월 5일자.
- 1936 「퇴폐적 「레코드」 풍기 치안법으로 철저 취체」, 『매일신보』, 7월

5일자.

- 1936 「저급 레코드 16종에 행정처분」, 『동아일보』, 8월 5일자.
- 1937 「풍속치안방해로 압수 8천매, 노래도 너무 에로틱하면 질색」, 『동아일보』, 6월 9일자.
- 1937 「악성 유행물 전성(全盛), 사회교화상 대문제, 영화, 레코드 취체강(取締綱)을 강화」, 『동아일보』, 6월 9일자.
- 1937 「조선문예회 신작가요 발표」, 『매일신보』, 7월 12일자
- 1937 「영화 레코드업자와 시국대책간담, 내무성에서 去 28일 총후수호(銃後守護)를 위하여」, 『조선일보』, 8월 30일자.
- 1937 「연극, 영화, 음악회 선전지까지 일단의 통제강화안」, 『매일신보』, 10월 28일자.
- 1938 「레코드의 신취체방침」, 『조선일보』, 1월 27일자.
- 1938 「레코드 3종압수, 대전경찰서에서 去 4일부로, ‘전화일기’, ‘내가 만약 바다에서 싸운다면’ 등」, 『조선일보』, 2월 6일자.
- 1938 「‘나는 행복이여요’ 압수 레코드 취체강화」, 『동아일보』, 2월 27일자.
- 1938 「조선기독교연합회 결성식」, 『조선감리회보』, 7월 16일자, 제6권 제14호.
- 1938 「근로보국의 노래, 총독부 학무국에서 만드러」, 『매일신보』, 7월 23일자.
- 1938 「성명」, 『기독신문』, 8월 16일자.
- 1938 「연파(軟派) 레코드성약(性藥)광고도 취체」, 『동아일보』, 9월 14일자.
- 1939 「국민가요 선외가작 발표」, 『매일신보』, 1월 26일자.
- 1939 「퇴폐기분 도발하는 불량레코드 검색」, 『동아일보』, 4월 3일자.
- 1939 「황국신민정신 고조 교가에도 인가제」, 『매일신보』, 4월 19일자.
- 1939 「교가를 인가제로」, 『매일신보』, 6월 3일자.
- 1939 「사변기념일에 자숙자계령(自肅自戒令) 가무음곡 정지」, 『매일신보』, 6월 21일자.

- 1939 「악질 레코드에 철퇴, 경기도 관내에 일제검색 실시」, 『조선일보』, 6월 23일자.
- 1939 「속악(俗惡)한 체가(替歌), 경찰국에서 엄중취체를 통첩」, 『매일신보』, 7월 26일자.
- 1939 「저속레코드 이입방지 간담, 去 8일 6사 대표와 경기도당국 회견」, 『조선일보』, 7월 9일자.
- 1939 「불온레코드 간행취체」, 『동아일보』, 8월 22일자.
- 1940 「사설 : 흥행장 취체에 관하여」, 『조선일보』, 2월 16일자.
- 1940 「저속한 가요 청산하고 국민신가(國民新歌)를 방송」, 『매일신보』, 6월 22일자.
- 1940 「재즈음악에 철퇴 왈츠도 엄중 제한, 레코드 음악을 정화」, 『조선일보』, 8월 3일자.
- 1940 「재즈 음악금지 레코드 음악도 정화」, 『동아일보』, 8월 4일자.
- 1940 「일본적 기독교로 발족 : 장로회지도요체」, 『매일신보』, 11월 10일자.
- 1941 「기독교조선감리교단 제1회 총회 결의문」, 『조선감리회보』, 4월 1일자, 제9권 제4호.
- 1941 「비속 레코드에 단(斷)」, 『매일신보』, 7월 19일자.
- 1941 「망국적 애조에서 우렁찬 군가조로」, 『매일신보』, 7월 19일자.
- 1941 「건전음악 보급을 결의」, 『매일신보』, 9월 14일자.
- 1941 덕천인파, 「긴급통고」, 『장로회보』, 10월 1일자, 제88호.
- 1941 감리교단본부, 「찬송가수정」, 『조선감리회보』, 11월 1일자, 제9권 제11호.
- 1941 「언론집회결사등임시취체법 내용」, 『매일신보』, 12월 15일자.
- 1941 「적국의 음반 섬멸」, 『매일신보』, 12월 30일자.
- 1942 「악극단에 자숙 강조」, 『매일신보』, 1월 10일자.
- 1942 덕천인파, 「긴급통고문 : 장로회용 신편찬송가 수정표」, 『장로회보』, 1월 21일자, 제104호.
- 1942 「연맹문화부 모집 국민가 당선자 발표」, 『매일신보』, 2월 23일자.

- 1942 「찬송가개정에 대하여」, 『조선감리회보』, 4월 1일자, 제10권 제3호.
- 1942 「음협 주최 음악경연회」, 『매일신보』, 9월 19일자.
- 1943 「미영계음악 : 일률(一律)로 금지는 안는다(정보국)」, 『매일신보』, 1월 19일자.
- 1943 덕천인과, 「고대하든 신편 곡조찬송가 수정판, 알외는 말씀」, 『기독교신문』, 5월 26일자, 제52호.
- 1943 덕천인과, 「경계」, 『기독교신문』, 8월 25일자, 제65호.
- 194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상치위원회의 전말」, 『기독교신문』, 10월 6일자, 제71호.
- 1944 「음악가에 기여증 교부코저 자격시험」, 『매일신보』, 8월 6일자.
- 1944 「남녀 8백명 참가 음악기예자 자격시험」, 『매일신보』, 8월 17일자.
- 1944 「음악기예자 자격 시험의 위원 결정」, 『매일신보』, 8월 11일자.
- 1944 「연극연예기예자 26일부터 제3차 심사」, 『매일신보』, 8월 22일자.
- 1945 「가극 여자 기예자 모집」, 『매일신보』, 5월 10일자.

잡지

- 1924 김영환, 「학교당국을 책망하시오」, 『신여성』, 6월호.
- 1924 홍난파, 「해는 잇슬지언정 리익은 업습니다」, 『신여성』, 6월호.
- 1924 한기주, 「일종의 군-소리겜지요」, 『신여성』, 6월호.
- 1924 김애리시, 「갖듯이나 탕일(蕩逸)한 음악뿐였는데」, 『신여성』, 6월호.
- 1933 이만규, 「유행가와 각계관심 : 교육자로서의 관심」, 『신가정』, 2월호.
- 1933 김창제, 「유행가와 각계관심 : 부형으로서의 관심」, 『신가정』, 2월호.
- 1933 현제명, 「유행가와 각계관심 : 음악가로서의 관심」, 『신가정』, 2월호.
- 1935 홍난파, 「재즈나 유행곡이 일반가정에 끼치는 영향 : 사회 교화상 폐해불무(弊害不無)치만」, 『신가정』, 8월호.
- 1935 김메리, 「재즈나 유행곡이 일반가정에 끼치는 영향 : 좋지 못한 레코드를 트러 노으면 남의 집 애라도 귀 막어주고 싶다」, 『신가정』, 8월호.
- 1936 「엇더한 레코드가 금지를 당하나」, 『삼천리』, 4월호.

1938 「신사참배 결의」,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7회 회록』.

#### 단행본

- 1905 윤치호, 『찬미가』, 경성 : 광학서관.  
 1913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 경성 : 조선총독부, 개정7판.  
 1914 『최신창가집』, 길림성 : 광성중학교.(영인본, 국가보훈처, 1966)  
 1912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 경성 : 조선총독부, 개정6판.  
 1915 \_\_\_\_\_, 『교과용도서일람』, 경성 : 조선총독부, 개정9판.  
 1923 한석원, 『소년소녀가극집 제1집』, 경성 : 영창서관.  
 1924 \_\_\_\_\_, 『소년소녀가극집 제2집』, 경성 : 영창서관.  
 1931 조선가요연구소 편, 『정선조선가요선집 제1집』.  
 1932 현제명, 『현제명작곡집 제1집』.  
 1933 \_\_\_\_\_, 『현제명작곡집 제2집』, 연희전문학교출판부.  
 1933-1939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  
 경성 : 조선총독부경무국도서관.  
 1934 이상준, 『풍금독습중등창가집』, 경성 : 삼성사.  
 1936 강신명, 『아동가요곡선삼백곡집』, 평양 : 농민생활사.  
 1936 경찰사조사(警察思潮社) 편, 『불온문서임시취체법요의(要義)』, 동  
 경 : 경찰사조사.  
 1940-1941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경찰개요』, 경성 : 조선총독부경무국.  
 1941 조선총독부경무국, 『금지단행본목록』, 경성 : 조선총독부경무국.  
 1941 八束周吉, 『朝鮮國民學校敎則の實踐』, 東京 : 日本出版社.

#### ■ 2차 자료

##### 단행본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서울 : 한길사, 1980.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서울 :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1996.

- 김영준, 『한국가요사이야기』, 서울 : 아름출판사, 1994.
- 김지평, 『한국가요정신사』, 서울 : 아름출판사, 2000.
-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 서울 : 한길사, 1997.
- 노동은 · 이건용, 『민족음악론』, 서울 : 한길사, 1991.
- 독립군가보존회, 『독립군가곡집 : 광복의 메아리』, 서울 : 독립군가보존회, 1982.
-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 서울 : 예술출판사, 2001.
-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서울 :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연구소, 1997.
- 박찬호, 『한국가요사』, 서울 : 현암사, 1992.
- 오지선, 『한국근대음악교육』, 서울 : 예술출판사, 2003.
-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서울 : 현암사, 2001.
- 이왕석, 『비판 커뮤니케이션』, 서울 : 나남, 1989.
- 이유선, 『한국양악100년사』, 서울 : 음악춘추사, 1985.
- 이혜숙 · 손우석, 『한국대중음악사』, 서울 : 리즈앤북, 2003.
-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서울 : 평화출판사, 1985.
- 임중빈 편, 『한말저항시집』, 서울 : 정음사, 1983.
-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서울 : 일지사, 1985.
- 조용만 · 송민호 · 박병채,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서울 : 현음사, 1982.
- 최창익, 『한국대중가요사1』, 서울 :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2003.
- 최창호, 『민족수난기의 가요들을 더듬어』, 평양 : 평양출판사,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 서울 : 민속원, 1998.
- 황문평, 『노래백년사』, 서울 : 송일문화사, 1981.
- \_\_\_\_\_, 『가요60년사』, 서울 : 전음사, 1983.
- \_\_\_\_\_, 『한국대중연예사』, 서울 : 부루칸모로, 1989.
- Held, Davi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논문

- 김혜정, 「일제하 음악교육정책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1997.
- 김명환, 「일제하 사상통제와 그 법체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 김창욱, 「일제 팻쇼체제기의 친일음악운동」, 『음악과 민족』, 민족음악학회, 1995, 제10권.
- 노동은,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낭만음악』, 낭만음악사, 1989, 가을호, 제1권 제4호.
- 노은희, 「일제시대의 음악교육정책」,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7.
- 천영주, 「일제강점하 음악교과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대학원, 1997.

K C I

<Abstract>

## **A Study of Musical Control Aspect in Korean Modern Period(1910-1945)**

Moon, Ok-Bae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a lot of statutes for the colonial ruling of Korea. The total number of law, orders, regulations and ordinances amounted to almost 10,000 for the 36 years of the colonization. Through such laws, Japan controlled music in almost every field of music such as songbooks, musical performance, records, musicians, religious music, and school music education.

Japan wanted to control music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apparatuses since they came to realize the ideological impact of lyrics on the public's minds regarding the Kore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the movement of patriotism and enlightenment, and independence that invoked nationalistic sentiments among Koreans and encouraged education and movements from the period of *the Deahan Empire* until its liberalization. In other words, they came to appreciate the ideological power of music. During the colonial rule, songs had been involved in all movements of independence and enlightenment. The purposes of any movements spread to the public through song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s and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s, songs were a form of struggle and a form of movement at the same time. From the viewpoint of the Japanese rulers, most of such songs were threats to their maintaining law and order in Korea. The Japanese rulers were aware of the power of songs that they wanted to control songs through institutional apparatuses for the sake of their colonial ruling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Government-General's control of music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focused on what apparatuses the Government-General used to control music and how they were enforced. That is,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the Japanese rulers utilized music as a way of controlling their colonization.

There were institutional apparatuses for the Japanese to control its colonization:

The sixteenth *Hakbu* ordinance, <The authorization rules for textbooks> in September 1908 and the sixth statute, <The publication law> in February 1909 for the control of songbooks; the third police ordinance, <The regulation of assembly> in August 1910 and the 197th departmental ordinance, <The regulation of assembly in Joseon> for the control of musical performance; the issuance of certification of artists for the control of musicians; the 47th departmental ordinance, <The regulation of record control> in May 1933 for the control of records; <The guidance on Christianity> in February 1938 for the control of church music; and <The Joseon ordinance of educ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music education. Besides, there were comprehensive measures to control music: The 40th departmental ordinance, <The punishment rules for police criminals> in March 1912; The 46th statute, <The law on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in April 1925; The 316th ordinance, <The law of the national mobilization> in May 1938; and the 97th statute, <The temporary statutes of controlling the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December 1941.

Most of the prohibited songs by the Japanese rulers were about the Korean tradition, nationalistic sentiments (*Hon and Eol*), the liberalization of Joseon, anti-Japanese sentiments, and proletariat songs promoting the class struggle. The reasons for punishment were mostly security or the obstruction to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which proves that the Japanese control of music was part of its colonial ruling policies.

The Japanese rulers intentionally made up and circulated songs promoting their ideology favorable to their colonial ruling not to mention the direct control of music. Those songs were called “*Sigukga*”, “*Aegukga*”, “*Geonjeongayo*”, and “*Gungmingayo*”, all of which were considered to conform to the Japanese ruling. In addition, they tried to get rid of the anti-regime songs through “the purifying movement of songs,” and “the reforming movement of national songs.” The Japanese rulers forbade some songs to be sung and encouraged people to sing songs agreeable to their ruling. In such two kinds of direct and indirect ways, the Japanese rulers controlled music in Korea and their purpose was to reinforce the colonial ruling.



© Keywords: Music Control, Song Control, Music Ban, Record Control, Music-Book Control, Performance Control, Certification of Artist, *Gungmingayo* Movement